힐스테이트 지제역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용지 1BL] 입주자 모집공고

힐스테이트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유의사항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 일체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7.06.(금)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번호는 제2018-영신-0000호 입니다.

■ 해당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조정지역 내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가격을 통보받아 확정 · 공시한 가격입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해당 주택에 입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입주가능일 이후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부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주택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청약자 자격 요건에 포함하여 청약 · 계약하는 경우 「도시주거 환경정리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 「도시주거 환경정리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 「도시주거 환경정리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또